

제 609 호  
77. 6. 1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춘  
편 집 : 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5444

# 시 보

## 차 례

- ◎ 조 례
  - 제 1169 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조례 개정조례..... 3
- ◎ 규 칙
  - 제 1703 호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7
  - 제 1704 호 서울특별시지방잡급직원규칙중 개정규칙..... 8 ✓
- ◎ 고 시
  - 제 16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변경 및  
지적승인..... 29
  - 제 16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29
  - 제 166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결정 .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30
  - 제 167 호 도시계획시설 (녹지) 지적승인..... 31
  - 제 168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31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1717

계	보조계장	공보계장	문화공보관	공보팀장	공보팀원	공람
26	X	Y	F	12	12	공람

제 169 호	1977 년도 제 1 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고시.....	32
제 170 호	도시계획사업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시행허가.....	33
제 171 호	도시계획사업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시행허가.....	34
◎	공 고	
제 115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 환지에정지지정공고.....	36
제 141 호	( 성동구공고 ) : 동공인실조 ( 개작 ) 공고.....	36
제 22 호	(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공고 ) : 응시자격 정지 처분공고.....	38
◎	예 규	
제 346 호	서울특별시 차관재개발사업 주택자금융자 처리규정.....	40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훈 **인**

1977. 6. 1

◎ 서울특별시조례 제 1169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설치) ①시민의 보건향상과 질병에 진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일반병원과 특수병원을 둔다.

②일반병원으로서 강남병원, 영등포병원 및 동부병원을 두고, 특수병원으로서 아동병원, 서대문병원 및 정신병원을 둔다.

제 2 조 (원장) ①강남병원의 원장은 지방의무기감으로 보하고, 기타 병원의 원장은 지방의무부기감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의 회 감독한다.

제 3 조 (공무원 정원) 각 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별표 1 과 같다.

제 4 조 (하부조직) ①강남병원에 서무과와 진료부를 두고, 서무과장은 지사계급으로, 진료부장은 지방의무기감으로 보한다.

②강남병원을 제외한 각 병원에 서무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계급으로 보한다.

제 5 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문서, 보안, 관인관수, 인사
2.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3. 수수료 사용료 및 진료비의 수납
4. 환자의 입, 퇴원
5. 환자의 진료 및 영양에 관한 사항
6. 원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6 조 (진료과목) ①각병원에 약제과, 간호과와 별표 2의 의료과목을 둔다.  
 ②약제과장은 지방약무기과로, 간호과장은 지방간호기과로 보하고, 의료과장은 지방의무 기정 또는 지방의무 기과로 보한다. 다만 의료과장은 전문의인 지방잡급 직원 또는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 7 조 (시행규칙) 병원의 위치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이를 시행한다.  
 다만 기존의 중부병원 및 남부병원의 폐지와 강남병원의 설치에 강남병원이 제원하는 날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적용에 의하여 폐지되는 중부병원 및 남부병원의 모든 권리의무는 강남병원에 승계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정원중 승진, 전보등을 한후 이 조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직급의 정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또는 적용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가. 각 병원의 직급별 정원

직 급	구 분		합 계	강 남	영등포	동 부	아 동	서대문	정 신	
	2	3								
1 급 내 지 5 급	2	간 의 무	1	1						
	2	울 의 무	6	1	1	1	1	1	1	
	3	간 행 정	1	1						
	3	울	행 정	7	2	1	1	1	1	1
		울	약 무	4	1	1	1	1	1	1
			간 호	6	1	1	1	1	1	1
		소 계	19	4	3	3	3	3	3	

직 급		구 분	합 계	강 남	영등포	동 부	아 동	서대문	정 신
1 급 내 지 5 급	4 갑	행 정	14	4	2	2	2	2	2
		약 무	13	3	3	2	2	2	1
		보 건	12	4	2	2	2	2	
		간 호	23	7	5	5	2	3	1
		소 계	62	18	12	11	8	9	4
	4 을	행 정	16	4	2	2	3	3	2
		약 무	13	3	2	2	2	3	1
		보 건	14	4	2	1	2	3	2
		간 호	42	15	6	6	5	8	2
		소 계	85	26	12	11	12	17	7
	5 갑	행 정	17	5	3	2	2	3	2
		보 건	13	4	2	2	2	2	1
		간 호	72	15	7	8	16	22	4
		소 계	102	24	12	12	20	27	7
5 을		행 정	8	2	1	1	4		
	보 건	2			1		1		
	간 호	177	67	12	10	56	25	7	
	소 계	187	69	13	12	60	26	7	
	합 계			463	144	53	50	104	83
교 용 원			255	52	19	19	74	64	27
총 계			718	196	72	69	178	147	56

## 나. 각병원 고용원의 직종별 정원

직종 병원	강남 병원	영등포 병원	동부 병원	아동 병원	서대문 병원	정신 병원	합계
운전	4	2	3	2	3	1	15
전공	2	1	1	1	1	1	7
기계	2		1	1	2		6
난방	2	2	1	1	3	2	11
수위	5	3	3	3	10	12	36
목공	1		1	1	1		4
타자	1			1			2
재봉	1	1	1	2	1	1	7
소독	2	1	1	1	8	1	14
교환	4	3	3	2	2	2	16
세탁	4	1		3	4		13
취사	5	2	2	3	9	4	25
잡부	12	1		4	18	1	36
민원보조	2	1	1		1	1	6
전달	1	1			1	1	4
물리치료	4			4			8
특수교사				4			4
보모				41			41
합계	52	19	19	74	64	27	255

<별표 2> 병 원 별 진 로 과 목		
구분	병 원	진 로 과 목
일반병원	강남병원	내과(2개), 외과(3개),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치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건강관리과, 방사선과(총 16개)
	영등포병원	내과, 외과(3개),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동부병원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각각총 14개)
특수병원	아동병원	소아과(2개), 외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 치과(총 6개)
	서대문병원	내과(2개) 외과, 성인전염병과, 소아전염병과, 마취과, 방사선과(총 7개)
	정신병원	내과, 정신과, 신경과(총 3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b>규 칙</b> </div> <p>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p> <p style="text-align: right;">1977년 6월 1일</p>	<p>㉓ 서울특별시규칙제 1703 호</p> <p>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38 조 (제 1, 2 담당관) 중 「방위와」를 「작전과」로 하고 「정보와」를 「정보 1, 정보 2 와」로 한다.</p>
--	---

제 51 조 (중앙청경비대)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1 조 (중앙청경비대) ① 중앙청경비대에 행정제와 경비소대 및 국무총리 공관경비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파견대를 둔다. 파견대장 및 계장(소대장)은 경감또는 경위로 보한다.

② 중앙청경비대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제

가. 대원의 복무인사

나. 경비계획 수립 및 근무지정다. 교육훈련

라. 전도자금출납 및 장비보급

다. 합동취사 및 식당 운영관리

바. 청사내 출입자(가수자)에 대한 검문검색

사. 불순분자의 잠입방지 및 검거

아. 청사내 유동순찰

자. 건강대막사 유지관리

차. 기타, 대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경비소대

가. 정부 중앙청사(중앙청, 종합청사, 경제기획원 및 치안본부)의 외곽경비

나.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검문다. 주차 질서유지

라. 불온물품의 반입방지 및 적발검거

3. 국무총리 공관경비 파견대

가. 공관경비 및 출입자 통제

나. 국무총리 경호근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방잡급직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6월 2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704 호

서울특별시지방잡급직원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잡급직원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부병원 및 남부병원의 폐지와 강남병원의 신설에 따라 조정되는 잡급직원의 정원은 강남병원이 개원되는 날로부터 적용하고, 시민회관의 잡급직원 정원에 대하여는 이규치시행후 최초로 개정되는 서울특별시 시민회관</p>	<p style="text-align: center;">설치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정원중 전보등의 인사조치를 하더라도 이 규칙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게되는 보수등급별, 직종별 정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시행 또는 적용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본다.</p>
--	---

(1) 일반회계 소관

종    별	계	본 청 (경찰서 포함)	구 출 장 소	동	토사분야사업소			기    타	기    타 사업소
					소 계	병    된	보 건 소		
합    계	3,830	781	618	369	1,202	333	684	185	860
1    중	171	44	19		39	4	1	34	69
2    중	402	203	20		7		4	3	164
3    중	305	12	29		204	68	133	3	60
4    중	368	111	147		37	7	6	24	73
5    중	383	45	101		118	56	11	51	119
6    중	920	133	266	369	68	8	52	8	84
7    중	3    갑	19	2						17
	3    을	65	34		16	4		12	15
	4    갑	147	23		86	2	63	21	38

종	별	계	본청 (영향서 포함)	구출 장소	동	보사분야사업소			기타 사업소	
						소계	병원	보건소		기타
7	4월	155	9	13		93		74	19	40
	5월	179	9			164		164		6
	5월	86				86		86		
8	2월15호	1								1
	2월10호	3								3
	2월5호	4	1							3
	3월10호	58	12							46
	3월5호	42	3			8			8	31
	4월9호	122	44	15		4	2		2	59
	기타	400	96			272	182	90		32

(2) 특별회계 소관

종	별	계	주택비	토지구획 정리비	하수 처리장	유도 도로	시민 회관	청소비	지하철운 수사업	수도 사업비
합	계	2,269	1	6	56	158	25	742	39	1,242
1	종	137			34	20	5			78
2	종	758			1			742		15
3	종	786				71	2			713
4	종	153		6	1				2	144
5	종	44			10	10				24
6	종	66	1		1		3		7	54
7	3월									
	3월	2					2			
	4월	3					3			

종 별	계	주택비	토지구획 정라비	하수처 리장	유도 도로	시민 회관	청 소 비	지 하 철 운수사업	수 도 사업비
7 총	4 월								
	5 갑								
	5 을								
8 총 기 타	2월 15호								
	2월 10호	2				2			
	2월 5호								
	3월 10호	4				4			
	3월 5호	8		6					
	4갑 9호	40		3	3	4			30
	기 타	266		54				30	182

기관명 : (1) 본청

종 별	정원	직	종
총	466		
1 종	26	제도사 1, 통신기술사 13, 전기기제공 6, 기계정비공 1, 기술교도사 3, 비 데오기사 1, 소방기술원 1	
2 종	30	속기사 2, 운전원 7, 전산키편취 13, 시정안내원 2, 관광안내원 2, 중기조종사 4	
3 종	12	영사기사 3, 전산키편취 7, 봉제조사보조반장 1, 구호협회간사보조 1	
4 종	51	보조수 32, 감시원 2, 모니터요원 4, 양곡단속원 13 ( 급여전역 국교보조 )	
5 종	44	청사관리인부 1, 관리인부 9, 보조부 3, 문화재관리인부 1, 문교지도원 29, 청소원 1	
6 종	74	사환 74	

종	별	정원	직	종
7	3	갑 2	예비군대대장 1, 도시계획전문상임위원 1	
	3	을 34	수석가정상담원 1, 수석부녀상담원 1, 화생방요원 21 프로그래머 11	
	4	갑 23	감시보조원 5, 일반가정상담원 8, 가족계획전문지도원 2, 오퍼레이터 4, 문화재전문위원 2, 결핵지도간호원 2	
	4	을 9	결핵관리요원 1, 윤락여성선도지도원 1, 항공사진사 4, 구호 협회간사 1, 도시개발자로요원 2, 슈퍼바이저 1	
	5	갑 9	식품위생감시원 8, 가족계획일반지도원 1	
	5	을		
8	2월 15호			
	2월 10호			
	2	을 5호 1	시사편찬수석전문위원 1	
	3	을 10호 12	항공사진사주임 1, 판독사주임 5, 화생방주임 1, 전자시스템 분석자 5	
	3	을 5호 3	판독사 3	
	4	갑 9호 40	화생방요원 27, 시사편찬전문위원 3, 시정개발연구원 1, 오퍼 레이터반장 1, 통신기술주임 3, 항공판독사 3, 전기보안담당 자 1, 보이러주임 1	
기	타 96	청원경찰 96		
기관명 : (2) 구, 출장소, 동				
종	별	정원	직	종
계		987		
1	종	19	전기기제공 17, 보이러공 2	
2	종	28	운전원 28	

종	별	정원	직	종
3	종	29	유수지전공 13, 유수지기계공 9, 가로정비원 4, 새마을복지 상담원 3	
4	종	147	보조수 17, 원예 수 1, 세원조사원 96, 안내원 4, 보안등수 리공 15, 감시원 12, 교관수 2	
5	종	101	청사관리인부 5, 관리인부 4, 경비원 6, 보조부 6, 청소원 46 수로원 2, 예표원 5, 지하도전기관리인부 27	
6	종	635	사관 635 (동사관 369 포함)	
7	3	갑		
	3	을		
	4	갑		
	4	을	13	일반부녀상담원 13
	5	갑		
	5	을		
8	2	을 15호		
	2	을 10호		
	2	을 5호		
	3	을 10호		
	3	을 5호		
	4	갑 9호	15	전기보안담당자 15
종	기	타		

기관명 : (3) 소방본부, 경찰국, 한강안전관리대				
종 별	정원	직 종		
		소 방 본 부	경 찰 국	한강안전관리대
계	340	70	245	25
1 종	18		기계정비공 17, 전기기계공 1	
2 종	173		운전원 3, 교봉순시원 170	
3 종	10			민방위훈련반장 0
4 종	60	타자수 2, 보조수 6	보조수 41, 타자수 11	
5 종	1		관리인부 1	
6 종	59	사환 59		
7 중	3	갑		
	3	을		
	4	갑		
	4	을		
	5	갑		
	5	을		
8 중	2	을 15호		
	2	을 10호		
	2	을 5호		
	3	을 10호		
	3	을 5호		
	4	갑 9호	4 통신기술주임 3	통신기술주임 1
기 타	15			청원 경찰 15

기관명 : (1) 산업대학, 교육원 및 운동장							
종	별	정원	직		종		
			산 업 대 학	공무원 교육원		종합운동장	서 울 운 동 장
계		68	11	4	9	44	
1	종	2		전기기제공 1	지도사 1		
2	종	5			운전원 2	운동장지도원 3	
3	종	8				운동기구기술사 8	
4	종	6			보조수 1	보조수 3, 원예수 2	
5	종	31	청소원 4 청사관리인부 1			경비원 7, 청소원 10, 예표원 9	
6	종	13	사환 4	사환 3	사환 3, 청부 1 전달부 1	사환 1	
7	3	갑					
	3	을					
	4	갑					
	4	을					
	5	갑					
	5	을					
8	2	을 15호					
	2	을 10호					
	2	을 5호					
	3	을 10호					
	3	을 5호					
	4	갑 9호	3	전기보안담당자 1 보이라주임 1			전기보안담당자 1
	기	타					

(5) 농 립 분 야					
종 별	정원	지 중			
		농촌지도소	농지사업소	양묘사업소	축산불위생검사소
계	30	7	5	17	1
1 종	6	기술교도사 3	차량기술원 2	전기기계공 1	
2 종	1		운전원 1		
3 종					
4 종	8			원예수 8	
5 종	8	청소원 1		경비원 7	
6 종	7	사환 3	사환 2	사환 1	사환 1
7 종	3	갑			
	3	을			
	4	갑			
	4	을			
	5	갑			
	5	을			
8 종	2	을 15호			
	2	을 10호			
	2	을 5호			
	3	을 10호			
	3	을 5호			
	4	갑 9호			
	기	타			



(6) 공원 관리 사업 소								
종	별	정	형	작		종		
				남 산 공원 관 리 사업 소	어 린 이 대 공 원 관 리 사업 소			
계		61		27		34		
1	종	5		전 기 기 제 공 3		전 기 기 제 공 2		
2	종	7				마 부 7		
3	종	12		유 도 도 르 배 표 원 12				
4	종	6		원 예 수 2		안 내 원 4		
5	종	18		청 사 관 리 인 부 1, 관 리 인 부 4 경 미 원 3		청 사 관 리 인 부 10		
6	종	2		사 환 1		사 환 1		
7	종	3	갑					
		3	을	2			수 리 사 2	
		4	갑					
		4	을	6	사 육 사 1		사 육 사 5	
		5	갑					
		5	을					
8	종	2월 15호						
		2월 10호						
		2월 5호						
		3월 10호						
		3월 5호						
		4	갑	9호	3			동 발 관 련 교 관 1, 전 기 보 안 당 당 자 2
		기 타						

## 기관명 : (7) 시립악단

종	별	정원	직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관현악단
계		192	116	76
1	종			
2	종			
3	종			
4	종	1	악기관리보조수 1	
5	종	3	경비원 2	정사관리인부 1
6	종	2	사환 1	사환 1
7	3	갑	17	시향총무 1, 시향편곡 1, 시향수석 15
	3	을	13	
	4	갑	32	
	4	을		
	5	을		
8	2	을 15호	1	시향지휘자 1
	2	을 10호	3	시향악장 2
	2	을 5호	3	
	3	을 10호	46	시향차석 15, 시향 1급 24 시향합창지휘자 1
	3	을 5호	31	시향 2급 27
	4	갑 9호	40	시향합창반주자 1, 시향 3급 24
기	타			

(8) 보건 분야					
종	별	정원	직		
			보 건 소	보 건 권 구 소	
계		709	684	25	
1	종	17	보이 라공 1	전기기 제공 1, 공해 측정 기상 15	
2	종	4	운전원 4		
3	종	133	간호원 120, 소독수 13		
4	종	9	보조수 6	보조수 3	
5	종	14	청사관리인부 10, 청소원 1	청소원 3	
6	종	53	사환 40, 전달부 12	사환 1	
7	3	갑			
	3	을	2	공해 측정 장비 관리 기술요원 2	
	4	갑	63	약사 13, X선사 13, 임상병리사 13 성병 전담간호원 12, 성병 전담 임상 병리사 12	
	4	을	74	결핵관리요원 22, 가족계획 선임지 도원 12, 가족계획 센터 지도원 40	
	5	갑	164	가족계획 일반지도원 164	
	5	을	86	동결핵요원 51, 가족계획 동요원 35	
8	2	을 15호			
	2	을 10호			
	2	을 5호			
	3	을 10호			
	3	을 5호			
	4	갑 9호			
9	기	타 90	의사 90		

기관명 : (9) 양로, 아동복지										
종	별	정원	직		총					
			양	로	원	경	생	원	아	동
제		38	7		4	27				
1	종	1			전기기계공 1					
2	종									
3	종									
4	종									
5	종	11	보조부 3, 취사부 3	취사부 2, 경비원 1		청소원 2				
6	종	2	사관 1			사환 1				
7	3	갑								
	3	을	10			수석아동복지지도원 1 부랑아전문지도원 9				
	4	갑								
	4	을	14			아동복지지도원 14				
	5	갑								
	5	을								
8	2	을	15호							
	2	을	10호							
	2	을	5호							
	3	을	10호							
	3	을	5호							
	4	갑	9호							
	기	타								

기관명: 6(10)부녀복지					
종 별	정 원	종			
		부녀취업관	동부여자기술원	남부부녀보호지도소	부녀복지관
계	44	3	22	8	11
1 종	3		보이라장 1	보이라장 1 기술교도원 1	
2 종					
3 종	3			보조 2, 사감 1	
4 종	1				미용사 1
5 종	19	보조부 3	경비원 2, 취사부 2 보조부 2	취사부 3	관리인부 2 취사부 5
6 종	1		사 환 1		
7	3 갑				
	3 을				
	4 갑	11		기술원 펄프장 관리인 1, 기술교도사 7	기술교도사 3
	4 을				
	5 갑	5		일반부녀상담원 5	
	5 을				
8	2월 15 호				
	2월 10 호				
	2월 5 호				
	3월 10 호				
	3월 5 호				
	4 갑 9 호	1		전기보안담당자 1	
기 타					

기관명 : (1) 병원					
종	별	정원	종		
			강 남 병 원	아 동 병 원	기 타 병 원
계		333	61	33	239
1	중	4			전기기계공 2 보이라공 2
2	중				
3	중	68			의료기사 8 간호원 60
4	중	7	승강기안내원 2		감시원 5
5	중	56	보조부 10	보조부 11	청사관리인부 1 보조부 33, 취사부 1
6	중	8	사환 3	사환 1	사 환 4
7	3	갑			
	3	을	영양사 1	영양사 1	영양사 2
	4	갑			임상병리사 2
	4	을			
	5	갑			
	5	을			
8	2	을 15 호			
	2	을 10 호			
	2	을 5 호			
	3	을 10 호			
	3	을 5 호			
	4	간 9 호	2	전기보안담당자 1	전기보안담당자 1
중기	타	182	의사 30, 수련의 14	의사 16, 수련의 14	의사 96, 수련의 23

기관명 : (2)장제 장, 보지 관리 사무소 및 근로자복지						
종	별	정원	직			종
			장 제 장	보지관리사무소	근로자회관	
계		38	7	10	19	2
1	총	2	전기기계공 1 보이라공 1			
2	총	1				운전원 1
3	총					
4	총	14		간사원 9	보조수 5	
5	총	18	취사부 4		보조부 4 취사부 10	
6	총	3	전달부 1	전달부 1		사환 1
7	3	갑				
	3	을				
	4	갑				
	4	을				
	5	갑				
8	총	5	을			
8	2	을 15 호				
	2	을 10 호				
	2	을 5 호				
	3	을 10 호				
	3	을 5 호				
	4	갑 9 호				
중기	타					

기관명 : (13) 위생처리장						
종	별	정원	종			
			서부위생처리장	북부위생처리장		
계		179	23	19	자동차정비사업소 137	
1	총	17	위생처리장기판조수 4	위생처리장기판조수 8	자동차정비사 5	
2	총	3	청소부근원 1	청소부근원 2		
3	총	29			자동차부정비사 29	
4	총	11	감시원 6		보조수 5	
5	총	41			경비원 6, 보조부 2 자동차정비원 33	
6	총	42	사환 1	사환 1	사환 2 자동차정비보조원 38	
7	3	감				
	3	울				
	4	감	10	위생처리장기사조수 6	위생처리장기사조수 4	
	4	울	17			자동차정비주임 3 중기정비공 14
	5	감				
	5	울				
8	2	울 15호				
	2	울 10호				
	2	울 5호				
	3	울 10호				
	3	울 5호	8	위생처리기계기사 4	위생처리기계기사 4	
	4	감 9호	1	기관수 1		
총	기 타					



기관명 : (14)산업분야, 기타							
종	별	정원	계량기검정사업소	연료시험소	도시가스사업소	자동차등록사업소	주택건설사업소
계		94	3	7	72	7	5
1	총	40			용접공 2, 도시가스기계기사 5, 도시가스안전관리원 33		
2	총	1				주차관리원 1	
3	총	1		감사원 1			
4	총	11		보조수 4	보조수 2	보조수 5	
5	총	5	경비원 1	청소원 1	경비원 2		청소원 1
6	총	13	사환 1 전달부 1	사환 1	사환 4, 전달부 1	사환 1	사환 4
7	3	갑					
	3	을					
	4	갑					
	4	을					
	5	갑					
	5	을					
8	2월 15호						
	2월 10호						
	2월 5호						
	3월 10호						
	3월 5호						
	4	갑 9호	12			전기보안담당자 1 보일러주임 2 도시가스기계주임 9	
총기 타		11			청원경찰 11		

## 기관명 : (15) 건설분야

종	별	정원	종			
			중기관리사업소	역청사업소	보육시험소	건설사업소
계		251	68	48	4	131
1	총	11		전기기제공 1, 화학기사 1, 역청개량원 1		
2	총	149	중기조종사 26	역청시험원 1, 역청기사 7, 중기조종사 22		중기조종사 101
3	총					
4	총	36	보조수 20		보조수 3	보조수 13
5	총	13	청사관리인 2 경비원 1	경비원 2		경비원 8
6	총	6	사환 1	사환 1	사환 1	사환 3
7	3	갑				
	3	을				
	4	갑	6	중기정비사 6		
	4	을	17	중기정비공 6	역청기공반장 3	중기정비공 6
	5	갑	6	중기정비원 6	중기정비공 2	
	총	5	을			
8	2	을 15호				
	2	을 10호				
	2	을 5호				
	3	을 10호				
	3	을 5호				
	4	갑 9호	1		전기보안담당자 1	
총	기	타	6	청원경찰 6		

기 관 명 : (16) 특별회계					
종 별	정원	수 도 배		주 택 비	보 조 수 장 정 리 비
		수	도		
계	1,315	1,242		;	6
1 종	112	계정비공, 전기기계정비공, 수도양수기계기사 1			전기기계공 16, 보이라공 2, 기계정비공 4, 용해측정기사 2
2 종	10	운전원 10, 중기조종사 5			운전원 1
3 종	713	수도조절수 407 수도정비공 306			
4 종	151	보조수 59 정수처분인분 85			보조수 6, 보조수 1
5 종	34	청사관리인부 9 보조부 15			청사관리인부 2 보조부 8
6 종	56	사환 42, 전달부 11		사환 1	사환 1
7	3	갑			
	3	을			
	4	갑			
	4	을			
	5	갑			
	5	을			
8	2	을 15 호			
	2	을 10 호			
	2	8	자동기계 운전원 2		
	3	33	전기보안 담당자 25 보이라주임 5		위생처리기사 6 전기보안 담당자 1 보이라주임 2
	3	182	청원경찰 182		
	4	갑 9 호			
중기	타				

기관명 : (16) 특별회계(2)

종	별	정원	직			
			유로도로	지하철본부	시 민 회 관	청 소 바
계		964	158	39	25	742
1	종	25	전기기제공 20		통신기술사 1, 전기기 제공 2, 기계정비공 1 비례오기 사 1	
2	종	742				중기조종사 10, 청소 운전원 642, 청소차 정비기능공 90
3	종	73	유로도로매 표원 71		영사기사 2	
4	종	2		보조수 2		
5	종	10	수도원 10			
6	종	10		사환 7	사환 3	
7	3	갑				
	3	을	2		프로그래머 2	
	4	갑	3		오퍼레이터 3	
	4	을				
	5	갑				
	중	5	을			
8	2	을 15 호				
	2	을 10 호	2		파이프울 견연주자 2	
	2	을 5 호				
	3	을 10 호	4		전자시스템분석자 4	
	3	을 5 호				
	4	갑 9 호	7	전기보안담 당자 3		자동제이거사 1, 전기보 안담당자 1, 화생방요원 1, 보이리수입 1
중	기	타	84	청원경찰 54	청원경찰 30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6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변경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다음과 같이 신설,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호 ('77. 3.16) 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 5. 28

서울특별시장

가. 결정 (신설, 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유형	번호	축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신설	중로	2	중2-147호	15m	7.0m	방이동 (광로 23)	방이동 (대 1-23)	
기정	소로	1		10m	1,000m	신길동 3,625	신길동 4,215	
변경	중로	1	중1-159호	20m	"	"	"	노선확장
기정	"	3	중3-90호	12m	210m	미아국교입구	길음동 (중 3-897)	
변경	"	3		"	"	"	"	삼양로입구 가각정리

○ 서울특별시고시제 16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 승인

1. 건설부고시 제 223 호 ('75.12.30) 로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

법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77.3.16)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 5. 30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유별번호	폭원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대로	3	81	25	550	방배동 107의1 방배동산 17-3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66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을 변경 결정하고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같은 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 3.16) 규정에 의거 이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 5.30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신설	학교 (정신여자중, 고등학교)	관악구봉천동산 70의1 의 17 필지	32,033 (9,689.9명)	
"	학교 (몽구여자중, 상업고교)	성북구성북동 168의 275의 13 필지	43,693 (13,217명)	
"	학교 (한광여자상업전수학교)	영등포구화곡동산 22의 57의 37 필지	18,597 (5,625.6명)	
기정	학교 (낙폴국민학교)	관악구신림동 589의1 의 12 필지	9,646 (2,918명)	
변경	학교 (남우국민학교)	관악구신림동 589의1 의 22 필지	11,580 (3,503명)	추가 585명

※ 별첨: 도면생략

<p><b>○ 서울특별시고시제 167 호</b></p> <p>도시계획시설 (녹지) 지적승인</p> <p>1. 건설부고시 제 89 호 ('77.5.27)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녹지)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아래와</p> <p>가. 도시계획시설 (녹지) 지적승인로서</p>	<p>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경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77. 5.30</p> <p>서울특별시장</p>		
<p>시 설 명</p> <p>신문 녹지</p>	<p>위 치</p> <p>종로구 신문로 2가 1</p>	<p>면 적 (㎡)</p> <p>2,455</p>	<p>고</p>
<p>도면 생략</p>			
<p><b>○ 서울특별시고시제 168 호</b></p> <p>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p> <p>1. 서울특별시 제 3 호 (1969.1.18)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p> <p>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p>	<p>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p> <p>3. 관계도서는 은평출장소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p> <p>1977. 5. .</p> <p>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의 위치 : 서대문구대조동 3-69 74-185</p> <p>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대조동 주택은행위 도로계설</p> <p>3. 사업규모 : [ 폭 : 8 m 연장 : 793 m</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p> <p>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7.3.1 ~ 1978. 3.3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 지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외 소유자와 토</p>	<p>지수용법 제 4조 3 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토지조사</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69 호</p> <p>1977년도 제 1 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고시</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197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 계 제 1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41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7년 5월 27 일 서울특별시시장 구자춘</p>
--	---

회 계 별	예 산 액
총 계	294,503,714
일반회계	202,318,714
특별회계	92,185,000
국민주택사업비 특별회계	13,886,000
주택개량사업비 특별회계	4,653,000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8,670,000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4,705,000
유도도로비 특별회계	1,227,000
시민회관비 특별회계	8,367,000
청 소 비 특별회계	7,193,000
의료시설비 특별회계	477,000
재해구호비 특별회계	264,000
수도사업 특별회계	30,079,000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	12,664,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 170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14 호 (77.4.20) 로 시설경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 가. 노선조서

사업)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법 제 25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시행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조서는 관악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분	등급	유별	목원	연 장	시 점	중 점
신 설	소로	3	6 M	194 M	봉천동산 163 - 1 호	봉천동산 162 - 1 호
"	"	3	6 M	60 M	봉천동산 163 - 17호	봉천동산 163 - 18 호
"	"	4	4 M	78 M	봉천동산 163 - 17호	봉천동산 163 - 1 호
"	"	4	4 M	78 M	봉천동산 163 - 34호	봉천동산 163 - 37 호
"	"	4	4 M	103 M	봉천동산 163 - 38호	봉천동산 163 - 30 호
"	"	4	4 M	116 M	봉천동산 164 - 1 호	봉천동산 163 - 22 호
"	"	4	4 M	116 M	봉천동산 163 - 16호	봉천동산 163 - 22 호

나. 공원조서

구분	분 류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아 동공원	봉 천 아 동공원	봉천동 163-1 호	1,008	

다. 쓰레기 적환장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쓰레기적환장	봉천동 162-2 호	605	

1977. 6. 1

서울특별시장

<p>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산 163 - 1호 외 22필지</p> <p>2. 사업의종류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p> <p>3. 사업시행면적 : 24,103평방미터</p> <p>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동산 89번지 김두식</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사업실시 허가시행일                  나.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3개월</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별첨</p> <p>8. 허가내용 : 별첨허가서, 도</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71 호</p> <p>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p> <p>1. 서울특별시고시제 114 호 (77.4.20)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동법 제 25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 (77.8.16) 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하여 시행허가하였거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관악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	--

가. 노선조서

구분	등급	류별	목원	연장	시점	종점
신설	소로	3	6㎡	185㎡	사당동산 45 - 11호	사당동산 44 - 6호
"	"	3	6㎡	235㎡	사당동산 44 - 6호	사당동산 44 - 6호
"	"	3	6㎡	194㎡	사당동산 44 - 6호	사당동산 44 - 6호
"	"	3	6㎡	101㎡	사당동산 44 - 6호	사당동산 45 - 13호
"	"	3	6㎡	19㎡	사당동산 44 - 6호	사당동산 45 - 13호
"	"	3	6㎡	25㎡	사당동산 44 - 6호	사당동산 44 - 6호

나. 공원조서					
구분	분류	공원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아동공원	사당아동공원	사당동산 44-6호	962	
다. 쓰레기 적환장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쓰레기적환장	사당동산 44-6호	579		
1977. 6. 1					
서울특별시					
<p>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산 44-6호 외 4필지</p> <p>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p> <p>3. 사업시행면적: 20,562 평방미터 (6,220평)</p> <p>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141-32호 장우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141-160호 박창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성동 43-25호 윤유백 서울특별시 관악구 본동 9번지 이창주</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사업실시 허가 시행일 나. 준공예정일: 착수일로부터 6개월</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적 및 지숙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생략)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별첨</p> <p>8. 허가내용: 별첨허가서. 도</p>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115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 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2 호

(7.7.5.9)로 환지계획변경공람  
공고한 영동 제 2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에정지에 대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  
에 의거 환지계획변경 인가하교  
동법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공  
고합니다.

2. 환지에정지 변경도서는 서울특별  
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사항을 별도 서면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도

같음합니다.

1977. 5. .

서울특별시 장

- 환지에정지변경지정내역 -

가. 사업명 : 영동 제 2 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16,519.4 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210의 1호 의 47 필지

라. 사업기간 : 1971. 8. 3 ~  
1978. 12. 31

○ 서울특별시 공고제 141 호









동공인신조 (개각)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하 하왕십리  
제 1 동장의 9 개동의 공인의 마멸로  
폐기하고 신조 (개각) 하여 사용토록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7. 5. 2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1. 공인의 명칭 : 성동구하왕십리제1동장의 9개동장의 인
  - 2. 사용일시 : 1977. 6. 1 09:00
  - 3. 공인의 인명 : 변 철
  - 4. 동공인신조 (개각) 동명 : 하왕십리제 1동, 하왕십리제 2동, 도선동, 사근동, 행당제 1동, 행당제 2동, 금호 2가동, 금호 3가동, 중곡제 2동, 자양동)
- 동 장 적 인 및 개 인 ( 개 각 )

하 왕 십 리 제 1 동 장	하 왕 십 리 제 2 동 장	도 선 동 장
		
사 근 동 장 개 인	행 당 제 1 동 장 개 인	행 당 제 2 동 장
 	 	

금 호 2 가 동 장	금 호 3 가 동 장 계 인
	 
상 목 계 2 동 장	자 양 동 장 계 인
	 
<p>◎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공고제 22 호 시행한 제 4 회 5 급유류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시 다음 응시자들은 응시원서를 허위작성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65 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시행일로부터 향후 5 년간</p> <p>응시자격정지처분공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공고제 2 호 (1977. 4. 11 )에 의거 1977. 5.</p>	

지방공무원 임용령 또는 시법시험령에 의한 시험과 기타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1. 처분내용

가. 응시자격 정지기간  
1977.5.5 - 1982.5.4

나. 응시자격 정지자 명단

응시번호	성명	본적	주소	부정행위방법
10	박윤열	경남창녕도천읍안 382	관악봉천 3 14-63 16/3	응시원서허위작성
20	김순철	경남창녕장마동정 484	· 9 15/5	·
27	김영희	경남창녕교하 228	중구중림 227 5/5	·
30	신형조	경남창원북외강 748	유산이촌 2 296 15/1	·
31	김창수	경남창녕장마동정 496	관악봉천 3 산 81 1/5	·
34	박병호	경북금릉대학대동 597	관악봉천 3 산 81 1/2	·
36	김진태	경남창녕도천일리 523	관악봉천 3 산 81 3/1	·
45	이선우	경남창원대산모산 182	유산이촌 2 296 15/3	

1977. 5. 31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

예 규

서울특별시 차관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용자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명한다.

77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서울특별시에 규제 346 호

서울특별시차관재개발사업주택자금용자처리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2 조 및 서울특별시주택개발 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 22 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하는 주택개발을 위한 차관재개발사업지구내 주민의 토지매입자금, 주택개발(개축)자금, 주택매입자금의 용자 및 상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AID주택보증차관협정서, 동집행협정서 및 서울특별시 주택개발재개발사업시행조례 및 동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 원부상환 )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각종 용자금에 대한 원부상환금은 원금분할상환금에 이자와 차관업무수행상 필요한 행정비률 가산한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별로 이자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 4 조 ( 용자대상자 ) 용자대상자는 76.1.1 이전에 축조된 건물의 소유자와 기타 차관공여측과 합의되는 자로 한다.

제 5 조 ( 용자기준 ) (1) 용자대상주



택의 규모는 계속의 경우에는 15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용자대 상대지면적은 분양지정면적이하로 하며 개량의 경우에는 현존건물의 개량전평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속의 경우 벽체는 세멘트 벽돌조 또는 연와조, 지붕은 와즙 또는 스라브로 하고 개량의 경우는 현존건물을 적법가능 설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매입자금의 용자는 지구내 공공시설저축철거 무허가건물소유자로서 시전립아파트입주와 집단정착지내 매지구입 및 주택전립 또는 주택매입에 한한다.

제 6 조 (가구당 용자한도) 가구당 용자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표준소요액의 70-80%로 한다.

다만 지구내 토지매입비용자는 실제소요액의 90%까지로 한다.

1. 지구내에서 주택을 계속하는 경우는 100만원이하

2. 지구외에서 신축 또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150만원이하

3. 지구내 개량의 경우는 60만원 이하

제 7 조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20년으로 하되 재정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는 단기의 상환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제 8 조 (상환방법) (i) 용자금 상환방법은 거치기간내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거치기간 경과후는 원금 또는 분기별로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거치기간중 대주는 상호합의에 의거 원금의 사전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경과후 차주는 일시상환할 수 있다.

(2) 상환금은 기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거치기간의 최초 3개월분 이자는 선불하여야 한다.

(3) 차주가 용자계약을 정당한 이

유없이 위반하였을 때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 9 조 ( 담 보 ) (1) 용자물 할때에는 용자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 3 자의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고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즉시 건물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 1 항의 경우 근저당권은 제 1 순위이어야 하며 그 설정액은 용자금의 16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0 조 ( 차 주 의 변경 금지 ) (1) 용자하여 매입한 대지를 3 년내에 사업지구내의 세입자가 아닌자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매입시 용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2) 근저당을 설정한 대지위의 건축 또는 개량한 건물에 대하여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까지 제 1 항을 적용한다.

제 11 조 ( 제출 서류 ) 용자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용자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매매계약서 -

별지 제 2 호서식 ( 사유지주제의

2. 토지내장농본 또는 농기부등본 ( 사유지에 한함 ) 및 환지 또는 분양지 예정지 증명

3. 근저당설정계약서 ( 별지제 3 호서식 )

4.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추가담보제공승락서 - 보증인, 미농기 또는 신축건물

( 별지제 4 호서식 )

6. 영수증 ( 계약금 영수증포함 )

7. 위임장 ( 별지제 1 호서식 )

( 본인이 아닌 경우 )

8. 건축허가 또는 대수리허가서

( 사본 )

9. 주요설계도서, 공사비명세표

공사일정표

10.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한 서류

제 12조 (용자금외 지급) (1)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매도증서를 발급하여 토지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토지매입자금용자와 동시에 토지대금을 수납한다.

(2) 개축자금용자는 3 등분하고 개량자금용자는 2 등분하여 별지 제 5 호서식의 용자금지급을 위한 기성고확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13조 (연대보증인) 용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동일지구내 거주자로서 재산이 확실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 14조 (용자신청기간) 자금의 용자신청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토지매입자금은 토지매수 통지일로 부터 2개월이내
- 2. 개량개축자금은 공공시설 준공 후 1년이내

제 15조 (용자계약실효) 용자계약 및 근저당설정계약은 용자금상환이 완료되었을때 해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 16조 (가치유지보상) 용자는 차관자금에 의함으로 관용변동에 따른 부담을 관용변동액의 1/4 은 차주가 부담토록 한다.

제 17조 (보험계약) 개량개축 용자들 받은 자는 용자액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용자금 완전상환시까지 계속 보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제 1호서식〉

## 용 자 신 청 서

일 금 원정 (토지 주택 원)

위 금액을 재개발지구내 토지매입비, 주택개발비(개축, 개량비) 주택매입비로 용자받고 본용자금용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과 연대보증인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 1조 원리금의 상환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시행하기로 한다.

1. 이자는 거치기간과 원리금분할상환기간을 통하여 년 9.4%로 한다.
2. 원금은 197 . . . 부터 1982.5.31 까지 거치하고 그 기간중의 이자는 년 월 일까지 상환한다. 다만 최초 3개월의 이자는 최초용자시 선납하여야 한다.
3.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197 . . .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여 본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상환한 할부금 원을 년 회로 나누어 년 월 일내에 상환한다.
4. 제 2호 및 제 3호에 할부금상환약정기일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기한전상환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지정한 기일에 원리금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실제상환일까지 제남상환금에 대하여 년 %의 물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가산 상환하여야 한다.

제 2조 용자금의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범위내에서 대수가 정한 이자율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제 3조 본 용자금은 재개발지구내 토지매입비, 주택개발비, 주택개축비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철거주민의 주택매입비에 한하여 사무하고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차주는 본용자금으로 매입한 재산에 대하여 변경,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물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주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용자금으로 매입한 토지권 3년내에 매매할 때에는 용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 5 조 차주는 다음의 경우에는 대주의 요구에 의하여 기간건이라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1. 제 3 자로부터 저당전불 혹은 차주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처분 또는 가압류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대수가 그 채권을 침해당할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본 용자금과 관련된 화재보험월부금의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4. 이자 또는 할부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5. 저당물전에 대하여 대수와 공동하여 또는 대수에 우선하는 담보권을 가진 자가 있게되는 경우
6.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이 불가능하게된 경우
7.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수가 정한바나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반하는 경우
8.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제 6 조 본 용자신청에 관련하는 문제의 해석은 대주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주소	구	동	번지
	차 주		①
	주민등록번호		
주소	구	동	번지
	연대보증인		②
	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시장 귀하

<서식제 2호>

시 유 재산 매매 계약서

계약대장

번호

1. 물건의 표시 :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 호

대 지 : 평 합 작

2. 매도대금총액 : 일 금 원정

계약보증금 : 일 금 원정

대금지불일 197 . . .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 서울특별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갑', '을' 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서기 197 . . .

매도인(갑) 서울특별시

위 대표 시장

㉑

매수인(을)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성 명

㉒

## 계 약 약 정 조 항

제1조 "을"은 "갑"에게 위 토지대금을 계약보증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계약보증금은 계약일자에 지불하고 잔금은 년 월 일 까지 회에 원씩 년 회로 분할 지불한다.

제2조 "을"이 "갑"에게 토지대금을 장기균등분할 상환하는 경우는 미지불 원리금에 년9.4%의 이자를 붙여 지정일자에 지불 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위 계약 보증금을 예도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4조 "갑"은 "을"이 매입대금을 완납한 매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지적 확정과 공부 정리가 완료된후 "을"의 신청이 있을때 이행한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을"은 계약재산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아래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매양도
2. 본 계약재산에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재산에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6조 본 계약에 의한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을"은 "갑"으로 부터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융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입 토지상에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본 계약 및 융자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채무 이행을 담보한다.

제7조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융자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를 당해지구 내 세입자가 아닌자에게 3년내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갑"으로 부터 토지매입 자금으로 받은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 8 조 ① 「울」이 제 1 조를 위반하여 기한내에 토지대금을 완납치 못하였거나 장기 분할균등상환인 경우 회 이상의 연체가 있거나 제 6 조 내지 제 7 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울」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1 항의 경우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기타는 반환하여 당해 토지는 갑이 제 3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 9 조 매각토지는 분양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이므로 확정처분 결과에 따라 지적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할수 없으며 갑은 증명된 토지대금을 정산시의 시가로 징수하고 감영된 토지에 대하여는 년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 10 조 용자금울 장기분할 납부하는 경우 대금지불은 매월 일까지 한다

제 11 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 울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 12 조 계약체결후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울」이 관리의무를 지며 또한 본 계약 토지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와 토지활용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하여 「울」의 책임으로 하고 「울」의 귀책사유로 「갑」이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울」은 본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서식 3 호>

주택자금용자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인 서울특별시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채무자 (이하 「울」이라 한다) 담보제공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근저당권의 설정) ① 채권자가 재개발지구내 토지매입, 주택개발, 주택개축, 주택매입비론 용자금급입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모든 내용과 이자 및 채무불이행시의 손해금 기타원인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에게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계속적 모든 채무(이하 본 채무라함)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하 저당물건이라함)에 순위 제1번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병의 소유 부동산에 제2번 근저당을 설정한다.

②저당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등이 풍부면과 상이하거나 또는 장래에 중, 계속되는 건물과 미등기 건물에도 있는 그대로 담보의 목적으로 한다.

③용자받은 토지 매입비는 용자와 동시에 용자받은 금액을 토지대가로 지불하고 이에 채권자는 그 토지상에 용자를 담보하는 근저당을 설정한다.

제2조(변제방법, 이자, 손해금등) ①채무자는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본 채무를 이행한다.

- 1. 채권최고액 : 일금                      원정
- 2. 변제년월일 :            년            월            일
- 3. 변제방법 :            년            거치            년월리금 균등상환
- 4. 이        자 : 거치 및 상환 기간의 이자는    년%

②이자의 납입기일은 매월 용자금 납부일 전일에 납입하고 지불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납입하되 공휴일 익일에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정상 납입일 익일부터 실제 지불일까지    년    %의 연체이자를 지불함.

③"을"은 위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이자율을 따라 변경된 날부터 지급한다.

제3조(담보, 보존의무) ①"을"과"병"은 갑의 사전승인없이 저당물건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등 각종 권리의 설정과 등기 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현황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을"과"병"은 담보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하여야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모든 지무에 대하여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현존하는 채무액을 일시불 해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익일부터 **·울·**은 채무완제일까지 상환일 원리금에 대하여 일변 5리의 지연 손해배상을 지불한다.

1. 1 회라도 원리금을 지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때
2. 다른 채무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조세공과금의 체납 처분등을 받았을때
3. 다른채무때문에 파산, 화의 혹은 회사정리, 경쟁회사등의 신청이 있었을때
4. 담보물건을 멸실 훼손 혹은 가치를 상당히 감소 시켰을 때
5. 기타 본 계약에 위반행위가 있을 때

제 4 조 ( 담보가치의 유지 ) ① 저당물건이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 감소하거나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갑·**이 증담보 혹은 대담보를 청구하면 **·울·**은 즉시 이를 제공하든가 아니면 채무의 전부를 변제 해야 한다.

제 5 조 ( 보험계약 ) ① **·울·**과 **·병·**은 저당건물에 관하여 **·갑·**이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이상의 보험계약을 **·갑·**이 지정하는 회사와 본 계약 체결시 체결하고 본 계약 존속기간중 계속하여 용자원리금 상환과 동시에 보험료를 지불토록 하고 보험증권과 보험료납입 영수증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울·**과 **·병·**은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를 **·갑·**에게 양도 하거나 이에 질권을 설정한다.

③ **·울·**과 **·병·**은 제 1 항에서 규정한 보험계약을 않거나 보험료납입 영수증을 **·갑·**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갑·**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불한다.

이때 **·울·**과 **·병·**은 **·갑·**이 지급한 보험료 기타 모든 비용을 납입일에 제 2 조 4 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보험료 기타 모든 비용에 가산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거 체결 또는 계속된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갠 받은 경우는 제무번제기에 불구하고 번제에 증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화제후 처리에 대하여도 갠의 의사에 의한다.

제6조 (저당물건의 보고조사) ① 저당물건의 상환에 갠이 담보물건의 조사 혹은 이에 관한보고를 요구할 때는 "울"이나 "병"은 어느때라도 이에 응한다.

제7조 (기한의 이익상실) 울과 병이 기간의 이익을 잃고 또는 기한내의 상환을 못했을 때는 갠은 그 선택에 따라 담보물건의 경매와 바꾸어 대물번제로서 담보물건 건부의 소유권을 원으로 전적하고 취득할 수가 있을 것으로 하여 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울과 병은 상기 소유권 이전의 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갠에게 제출해 놓도록 한다.

제8조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이 원만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한 것을 1통씩 보관한다.

197 . . . . .

주 소 : 서울특별시 대명로 1가

제권자(갠) : 서울특별시 장 (인)

주 소 :

제무자(울) : (인)

주 소 : (인)

담보제공자(병) :

표시물건 :

<서식 4 호>

추 가 담 보 제 공 승 낙 서

대출번호

년 월 일자 체결한 금융계약 및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에 따라 아래기록(1)과 같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금번 다시 아래(2) 기록의 부동산을 추가담보로서 제공하고 앞에 기록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기재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 하였음을 확약하여 후일을 위하여 이 추가담보제공 승낙서를 작성합니다.

197 . .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성 명

채권자점 근저당권자 서울특별시

아 래

1. 년 월 일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등기접수 제 호로서  
등기 필한 의 필등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2. 부동산 목록

서울특별시 장 귀하

## &lt;서식제 5호&gt;

## 주택개량개축비 융자지급시 기성고확인기준

주택개축 용자는 공정을 다음 3단계로 구분하고 개량용은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기성고 확인후 융자금을 지급한다.

## 1. 단층주택신축시

## 가. 1차공정

- (1) 대지상 장애물제거 정지
- (2) 기초 및 내외벽체 및 골목 틀이 높이까지 완료
- (3) 지붕기와 잇기와 골목마감 공사완료
- (4) 옥내 배선 전기공사 완료
- (5) 영지봉일때는 스타브공사 완료
- (6) 온돌 축조 및 바닥축조 완료
- (7) 내외벽 마감공사 완료
- (8) 급배수공사 50%이상 완료

## 나. 2차공정

- (1) 창호, 도장, 내장 및 잔여미장공사 전부 완료
- (2) 전기외선 및 급수배수공사 완료
- (3) 대지축조 및 부지와 도로공사 완료
- (4) 용자대상 부대 시설공사 완료
- (5) 건물준공 검사완료

## 다. 3차공정

- (1) 후위담보 설정

2. 2층주택 신축시

가. 1 차 공 정

- (1) 단층주택 1차공정 (1-8)와 동일
- (2) 1층벽체공사 및 굴뚝이 2층바닥높이 까지 완료
- (3) 2층 스라브 공사완료
- (4) 2층지붕 공사완료
- (5) 마루틀 및 반가틀 공사완료
- (6) 옥내전기 배선공사 완료
- (7) 옥외 전기배선공사 완료

나. 2 차 공 정

- (1) 단층주택의 제 2 차 공정과 동일

다. 3 차 공 정

- (2) 후취담보 설정

3. 주택 개 량 시

가. 주택개량 기성고 확인공정은 신축시의 1,2 차공정에서 준공검사만을 받기전까지를 1차공정으로 하고 준공검사필증 후취담보 설정을 2차 공정으로 한다.

4. 기성고 확인시 유의사항

- 승인된 설계도서외 임의변경여부
-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 조치
- 용자 승인전 사전공사금지 위반여부
- 준공시에는 후취담보 취득가능여부 확인

<서식제 6 호>

기 성 고 확 인 신 청 서

주 소 :

성 명 :

아래 건물에 대한 신속 대수리 공사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하였으므로 이에 기성고 확인을 신청합니다.

기성고 확인신청회수

계 회

건물소재지

구

동

번지

호

(분양처 환지번호

호)

현장 확인 희망일

197

.

.

.

시

신청의 제출일

197

.

.

.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제 7 호>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대                    평                    합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귀시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기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    년    월    일

신청인

①

서울특별시 장    귀하



<서식제 8 호>

매 도 증 서

부동산의표식

매도 년월일 서기 19            년            월            일

대 금

위 부동산은 매도인의 소유인바 귀하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물림없이 받았으므로 이 증서에 기명 날인 한다.

매도인    서    울    특    별    시

위 대표    서    울    특    별    시    장

<b>&lt;서식제 9 호&gt;</b>	
<b>위 임 장</b>	
부 동 산 의 표 시	인 지 침 부 한
등기원인과 년 월 일	서기 197      년      월      일
등기외목적	
서울특별시 위 대표 서울특별시장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 한다. 서기 19      년      월      일

<서식제 10 호>

시유재산임대및예수신청서

- 1. 재산의표시 :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            호
- 2. 재산종별 :            대
- 3. 점유명수 :            명            합
- 4. 차수목적 : 건물부지
- 5. 대부기간 : 귀시 지시에    옴함.
- 6. 대부료 :
- 7. 예약대금 :            (명당            원)

별첨과 같이 관계서류 첨부신청 하오니 임대 및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            년            월            일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번지            호

성 명 :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2.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대지증명 각 1통
- 3.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각 1통

<서식제 11 호>

질 권 설 정 계 약 서

서울특별시를 **갑** 이라 하고 차주 **을** 로하여 **갑** **을** 사이에 다음의 보험증권상에 보험회사와 지급승락을 얻어 환급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보험증서를 인도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1. **을** 은 일금 원을 **갑** 으로 부터 주택자금용으로 차용한다
2. 전항의 용자금의 변제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3. 제 1항 용자금의 이자는 월 %로 하여 매월 일까지 **갑** 에게 납부한다.
4. 원금 및 이자변제의 장소는 **갑** 의 주소로 한다.
5. **을** 은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아래에 기재한 보험증권상에 **갑** 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가. 증권번호

나. 보험금

다. 계약시기 년 월 일 계약종기 년 월 일

라. 보험료납입 및 만기

마. 피보험자 생년월일

만 기 시

6. 전항의 질권은 원금과 이자 및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배상 및 질권실행의 비용을 담보한다.
7. 이 질권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상기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각 1 통씩을 보존한다.

질권자 서울특별시장 (인)

<서식제 12 호>

연 대 보 증 제 약 증 서

채권자 서울특별시를 갑으로 하고 보증인 을 을로 하여  
갑 을 간에 다음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①보증인 을은 채권자 갑이 채무자 에게 갖는  
하기 토지매입, 주택개량, 주택개축, 주택매입비 용자에 따른 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할  
책임을 부담할것을 약정한다.

② 채권자 갑으로 부터 채무자 에 대한 년 월 일자  
토지매입, 주택개량, 주택개축, 주택매입비 용자신청에 따른 대부원금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 이후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할의 을에 대한 이자 채권 및 기한후 년 할 분의 을에  
의한 지연손해배상금 채권 제2조 을은 채무자 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갑으로부터 전기 기재의 금액범위내에서 청구들  
받았을 때는 1주간 이내에 그 청구들 받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한다.

제4조 을이 제2조의 기간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원금이  
자 및 지연손해 이외에 금 원을 위약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2통 작성하여 갑, 을  
서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유한다.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채 권 자 : 서울특별시장 (인)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채 무 자 : (인)

<서식제 13 호>

담 보 제 공 승 낙 시

채권자 가 귀시로부터 토지매입, 주택개량, 주택계축비를 용자받음에 있어서 이의 담보로 본인소유의 아래표시 부동산을 귀시에 담보로 제공 하여 최고금액 원정 근저당권 설정 승락합니다.

앞으로 본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제하기까지는 위의 최고액 한도 내에서 당초 채무는 물론 계속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계속 담보 제공함을 승락하고 본 용자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 부동산 목록중 공부상 표시되지 않은 건물등 재산도 근저당된 것으로 간주함은 물론 앞으로 건축하여 등기 등록할 재산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확약합니다.

1977 년 6 월 1 일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담보제공자 (인)  
서울특별시 장 앞

아 래

부동산의 목록